

## 보험 브리핑

삼성생명 '고품격 인생보장보험'

주보험 가입만으로

3대질병·치매 등 보장

삼성생명이 주보험 가입만으로 3대 질병을 담보하는 종신보험을 출시했다.

◆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등 기본 보장

삼성생명은 3대 질병과 중증장기요양, 치매 등을 보장하는 '삼성 고품격 인생보장보험'을 공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최초 1회에 한해 가입금액의 130%를 종신까지 보장한다. 5대 진단 사유 발생 전에 사망 시에는 가입금액의 100%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납입면제 범위를 확대했다. ▲자궁암 ▲전립선암 ▲급성뇌경색증Ⅱ 등을 진단받거나 장애지급률 50% 이상이라면 보험료 납입을 면제한다.

## NH농협손해보험

유병자 심사 간소화 총 65개 담보 보장

NH농협손해보험이 유병자간편심사 제도를 통합한 건강보험을 출시했다.

◆ 심사 간소화 담보는 65가지로 넓혀

NH농협손해보험 '(무) NH하나로 간편한건강보험'의 가입을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다섯 가지의 간편심사 제도를 하나의 상품에 통합했다.

총 65개의 담보를 보장한다. ▲중증 갑상선암진단비 ▲특정면역항암약물 허가치료비 ▲뇌졸중혈전용해치료비 ▲특정허혈성심장질환혈전용해치료비 등 4개의 신담보를 탑재하여 보장영역을 넓혔다.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상해50%후유장애 ▲질병 80%후유장애 ▲상해성뇌출혈 발생 시 납입면제 제도를 운영한다.



문동권 신한카드 사장(왼쪽)과 이영종 신한라이프 사장이 복합상품 출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라이프

## 신한라이프

신한카드 발급 고객 치아보험 가입시 할인

신한라이프가 신한카드와 협업을 통해 치아 보험을 선보인다.

◆ 자부심 갖고 웃을 수 있는 치아보험

신한라이프는 '신한라이프 더 프라이드 복합 상품'을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제휴 상품의 키워드는 '프라이드(PRIDE)'다. ▲더프라이드 신한참좋은치아보험플러스Ⅱ ▲'신한라이프 더프라이드' 카드상품 등으로 구성했다.

'더프라이드 신한카드'를 발급한 고객이 치아보험에 가입하면 2회차 보험료부터 5%의 할인 혜택을 적용한다. 0세부터 최대6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크라운 치료 ▲레진 충전 치료 ▲임플란트 ▲틀니 등 보철치료까지 보장한다. /김정산 기자

## '예보한도' 상향 논의 막바지... 내달 매듭질까

(예금자보호)

해외 주요국 물가따라 인상 추세

예보로 인상 대출금리 영향 우려 5000만원 초과 예금도 1~2% 뿐

2001년부터 23년째 5000만원으로 묶여 있는 예금자보호한도 논의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호제도 개선방안을 내달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23년만에 법개정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예금자보호한도란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자에게 예금액을 돌려줄 수 없게 됐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다. 원금과 이자를 합쳐 한 금융회사당 1인 5000만원까지 보호가 가능하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와 예보는 다음달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앞서 예보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 정도까지 2~3단계로 나눠 인상하는 방안과 이를 위해 금융회사의 예금보험료를 올리는 방안을 논의했다. 8월까지 개선방안을 발표하기로 했지만, 지금까지 미뤄진 상태다.

(국가별 1인당 예금자보호한도)

	미국	유럽	영국	일본	캐나다	한국
1인당보호한도	24만달러	10만유로	8만5000파운드	1000만엔	10만 캐나다 달러	5000만원
GDP대비 보호한도 비율	3.3	0.9~5.8배	2.3배	2.3배	1.4배	1.2배

## ◆ 싱가포르·홍콩 한도 상향

5000만원인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하려는 이유는 경제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약 4187만원으로 2001년 약 1492만원 보다 2.8배 증가했다.

다만, 우리나라 예금보호한도는 해외 주요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국가별로 보면 일본은 1인당 GDP는 441만엔(3958만원) 예금보호한도는 1000만엔(8976만원)으로 2.3배, 캐나다는 1인당 GDP가 7만2580달러(7117만원) 예금보호한도는 10만캐나다달러(9806만원)로 1.4배다. 우리나라가 1.2배로 훨씬 낮다.

여기에 일부 국가는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하고 있다. 물가가 오르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그 결과 보호한도를 초과하는 예금이 늘어난 영향이다. 싱가포르의 예금자보호한도를 7만

5000달러에서 10만 싱가포르달러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상향시 전액 보호되는 예금자비율은 89%에서 91%로 확대된다. 홍콩도 예금자보호한도를 50만에서 80만홍콩 달러로 높인다.

## ◆ 5000만원 이상 예금 1~2% 불과

다만 업계안팎에서는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금융회사는 예금자보호한도를 높이면 예보료율이 올라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예보료율은 금융기관이 고객들에게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지급 불능사태를 대비해 예금보험 공사가 금융사로부터 받아 적립해 놓는 돈이다. 예보료율은 예금액 대비 은행 0.08%, 증권사·보험사 0.15%, 저축은행 0.4%다.

예컨대 은행의 경우 대출금리를 대출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합쳐 책정하

는데, 가산금리에는 리스크프리미엄, 유동성프리미엄, 신용프리미엄, 자본비용, 업무원가 등을 비롯해 예보료가 포함된다. 예보료 인상이 대출금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보호한도인 5000만원을 초과하는 비중이 1~2%에 불과하다는 점도 상향 필요성을 낮춘다. 지난해 9월말 기준 5000만원 이하 예금자수 비율은 전체의 98.1%다. 국제예금권고치 90%를 훌쩍 넘는 수준으로, 국내 금융회사에 자금을 예치한 거의 모든 일반 고객이 현행 예금보호 한도 내에 있다는 의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3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를 통해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경우 영향을 받는 건 예금액이 5000만원~1억원 이하인 경우"라며 "해당하는 예금자는 1~2%에 불과해 일부 상위계층에게만 편익이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 금융사고 피해 1.1조... 80% 내부직원 소행

(최근 5년간)

올 은행 직원 사고만 585억 달해 내부통제 실질적 준수 방안 시급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특히 내부직원에 의한 금융사고가 전체의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는데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준수토록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은 1조1066억원이다. 이 가운데 내부직원에 의한 금융사고가 8646억원 규모로 78%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발생한 금융사고 총 451건 중 내부직원에 의한 금융사고는 264건으로 전체의 59%를 차지했다. 건수보다 금액이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부직원에 의한 금융사고의 경우

건당 사고규모가 더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내부직원에 의해 발생한 금융사고를 업권별로 보면 금융투자가 594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은행 1962억원 ▲보험 314억원 ▲저축은행 209억원 ▲여신전문금융153억원 ▲대부 67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사고 건수로 보면 은행이 149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금융투자 47건 ▲보험 29건 ▲여신전문금융 26건 ▲저축은행 12건 등이다.

특히 은행은 내부직원에 의한 금융사고가 2020년 10억원에서 2021년 296억원, 2022년 903억원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사고 금액도 벌써 585억원에 달한다.

은행의 경우 회수율도 낮다. 은행에서 내부직원에 의한 금융사고 가운데

회수한 금액은 221억원으로 11%에 그쳤다. 전체 내부직원에 의한 금융사고의 회수율 43%를 크게 밑돈다.

회수율은 업권별로 보면 보험(60%, 188억원), 저축은행(57%, 118억원), 금융투자(53%, 3156억원), 여신전문금융(47%, 71억원) 등이다.

김 의원은 "작년 대형 금융사고 이후 금융당국에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으나 실효성 있는 방안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금융사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내부통제 기준 준수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금융사가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하도록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 신보, 中소 안정 지원 명절 전후 3.6조 규모 매출채권보험 인수

신용보증기금은 정부의 '추석 민생안정 대책'의 목적으로 중소기업의 외상 거래대금 미회수에 따른 연쇄 부도 방지와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명절 기간 전후로 3조6000억원 규모의 매출채권보험을 인수한다고 18일 밝혔다.

매출채권보험은 신보가 1997년 중소기업부에서 업무를 수탁받아 운영하는 공적보험체제로, 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판매한 후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손실금의 최대 80%까지 보상해 준다.

가입대상은 중소기업 또는 평균 매출액 등이 3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이다. 다만, 담배, 주류, 귀금속·도매 등 보험 운용의 필요성이 낮은 업종은 보험계약대상에서 제외한다.

보험계약을 희망하는 기업은 10개 지역 전담 신용보험센터와 99개 전국 영업점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신용보증기금 고객센터를 통해 가까운 영업조직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신보는 올해 매출채권보험 규모를 21조2000억원 규모로 운영하며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 중이다. 또한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및 18개 기초자치단체, 신한은행과의 보험료지원 협약을 통해 복합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대폭 완화해 보험 가입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신보 관계자는 "기업들이 매출채권보험을 적극 활용해 연쇄도산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 금융사 국외지점, 외인 대출채권 부실시 해외 양도 가능

금융위 대부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금융회사는 해외인프라투자시 인수한 해외채권을 외국 금융회사에 매각할 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 국외지점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대출해준 경우에도 대출채권을 외국으로 양도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대부업법에 따르면 현재 대부계약에

다른 채권양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여전사, 대부업체 등을 통해 대출을 받고 연체된 경우, 불법 추심기관 등으로 채권을 팔아 추심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아직까지 대부업법에는 채권양도기관에 외국 금융회사가 언급돼 있지 않고, 양도를 제한하는 채권유형, 차주형태도 명시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우선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나누고, 비거주자인 외국 차주(개인·법인)의 경우 대출채권을 외

국으로 양도할 수 있게 했다. 한국 금융회사 국외지점의 경우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부실채권을 해외에 양도할 수 있다는 의미다.

국내 거주자인 차주는 개인과 법인으로 나누어, 법인이 해외 채권을 외국 금융기관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게 했다. 외국금융회사는 외국 은행·보험·증권사·펀드·상호금융·신탁업자·정책금융기관 및 등록 특수목적법인(SPC)이다.

/나유리 기자